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참 전 유 공 자 등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2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제13조제1항 및 제2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
하되,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나.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제13조제6항 및 제7항)

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별표2)
생계지원금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참전명예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을 “환수하는”으로,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환수금 반납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만료일”을 “만료일로”로, “발급”을 “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를 “사람으로부터 반납금”으로,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현행	개정안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u><신설></u>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

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
처분 통지 전에 참전명예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
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
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
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
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 환수하는 -----

<신 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37조에 따라 참
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
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
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
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
당

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
원금

3.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
원에 대한 보조금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

수금 반납고지서-----
-----. 이 경우 반납고지서
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
는 국고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 제3항-----

----- 만료일로 -----

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설>

----- 발부-----
--.

⑤ 제3항과 제4항-----
----- 사람으로부터 반납금 -----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
-----.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신 설>

<신 설>

<신 설>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u>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 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u>계급·군번·성명·본적</u> 등이 <u>군기록 또는 경찰기록</u>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u>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제14조(결손처분) ----- <u>법 제36조제4항</u>----- ----- ----- ----- ----- -----.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 무 면제사유) ① ----- ----- ----- ----- -----. 1. ----- -- <u>계급·군번·성명·등록 기준지</u>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

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계급·군번·성명·본적”을 “계급·군번·성명·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5호(종전의 제22호) 중 “관한”을 “관한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으로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

2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련 자료

2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련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조직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